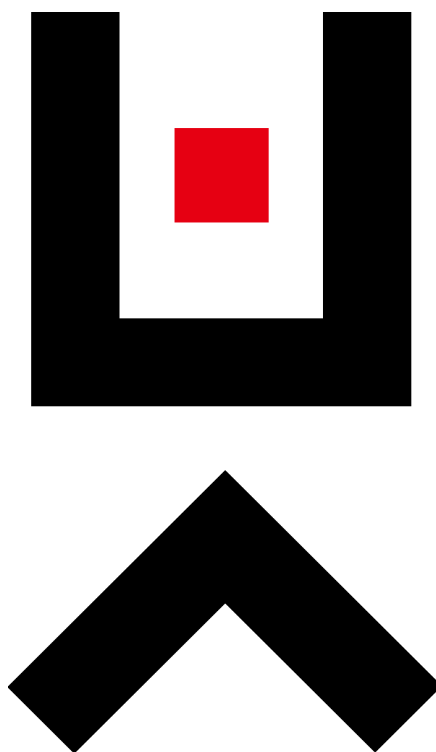


---

# 과업지시서

---

2024부산비엔날레 영상장비 대여 및 설치 업체 선정



2024. 6. 11.

사단법인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

## 1 과업개요

1. 사업명 : 2024부산비엔날레 영상장비 대여 및 설치
2. 전시개요
  - 가. 전시명 : 2024부산비엔날레
  - 나. 전시주제 : 《어둠에서 보기》, *Seeing in the Dark*
  - 다. 일 시 : 2024. 8. 17. ~ 10. 20.(65일간)
  - 라. 장 소 : 부산현대미술관 및 중·동구 일대
  - 마. 주 최 : 부산광역시, (사)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
3. 과업목적 : 2024부산비엔날레의 성공적인 전시를 위해 영상장비를 대여하고 지정 장소에 설치함
4. 규 모 : 작품 36점, 물품 400여개
5. 용역기간 : 계약체결일 ~ 행사종료 결과보고서 제출시까지
  - 가. 반입 및 설치 기간 : 2024. 7. 18. ~ 2024. 8. 14.
  - 나. 사용기간 : 2024. 8. 15. ~ 2024. 10. 20.
  - 다. 반출기간 : 2024. 10. 21. ~ 2024. 10. 30.
6. 사업설명 : 제안요청서 참조
7. 사업예산 : 금일억구천만원정(₩190,000,000, 부가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)
8. 계약방법 : 협상에 의한 계약
9. 과업주체 : 이하 본 과업지시서에는 주최자인 (사)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를 ‘발주처’ 라고 하고, 과업수행자를 ‘선정업체’ 라고 한다.

## 2 과업의 내용

### 1. 일반사항

- 가. 영상장비 임차 및 설치의 품질보장을 위해서 ‘선정업체’ 는 장비리스트에 명시된 사양과 동일 사양인지를 ‘발주처’ 의 담당자와 확인을 거쳐야 한다.
- 나. 작품연출에 필요한 일체 영상장비, 부속구조물,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할 경우 ‘선정업체’ 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장비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동에 필수적인 기술전문 인력을 제공한다.

- 작품별 기술 관련 사전 분석 및 기술 협의 방법, 기타 제반 기술상담 등 작품구현을 위한 일체의 기술을 제공한다.
- 전시기간 중 ‘발주처’가 요청하는 작품의 유지보수, 철거, 복구, 재설치 등을 ‘발주처’가 지정한 기한 내에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.
- 기타 ‘발주처’의 요구에 따른 장비 및 물자를 제공한다.

## 2. 영상장비 입차 내역

구 분	품 목		수 량	계
<b>합 계</b>				<b>403</b>
1	Video equipment	Projector	23	69
		Projector Screen	11	
		Monitor	31	
		LED Display	4	
2	Audio equipment	Speaker	117	204
		Headphones	30	
		Audio Amplifier	10	
		Audio Mixer	8	
		Audio Interface	8	
		Subwoofer	5	
		mic	26	
3	Media Player		32	32
4	PC		12	12
5	DMX		1	1
6	Software		5	5
7	etc. (Cables, Brackets, Stands, etc.)		80	80

※ 세부내역은 별도의 장비리스트를 참조

## 3. 과업일정

- 가. 영상장비 수급 :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
- 나. 영상장비 설치 : 2024. 7. 18. ~ 2024. 8. 14. (28일간)
- 다. 영상장비 시험가동 : 2024. 8. 14. (1일간)
- 라. 영상장비 사용 기간 : 2024. 8. 15. ~ 2024. 10. 20. (67일간)
- 마. 영상장비 철거 : 2024. 10. 21. ~ 2024. 10. 30. (10일간)

### 3 임차 및 설치 조건

#### 1. 영상장비 수급

- 가. ‘선정업체’는 ‘발주처’의 요구에 따라 2024부산비엔날레의 참여 작가들의 작품구현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, 부속장비, 소모품, 물자 등을 수급하여야 한다.
- 나. 각종 소프트웨어, 하드웨어 장비는 구매 전 제품의 성능과 사양서를 사전에 ‘발주처’와 협의 후 수급해야 하며, 장비 유지관리 매뉴얼을 ‘발주처’에 제출한다.
- 다. 작품연출에 필요한 기자재의 사양, 종류, 수량 등은 ‘발주처’와 협의하여야 하며, 계약 후 10일 이내에 필요 장비 수급을 완료하여야 한다.
- 라. 과업 수행 기간 동안 장비의 정비, 점검을 철저히 하여 전시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마. ‘선정업체’는 본 과업지시서와 장비리스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품 및 장비(브라켓, 케이블 등), 고정 장치 및 부속구조물을 제공하고 설치하여야 한다.
- 바. ‘발주처’의 요구가 없는 이상, ‘선정업체’는 기자재 모델의 임의변경은 불가하며 대체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‘발주처’와 협의 후 대체하여야 한다.

#### 2. 영상장비 설치 사항 변경

- 가. ‘발주처’의 승인 후 설치 중이더라도 작가의 의도와 구현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영상장비의 설치 위치, 방법 및 형태 등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‘선정업체’는 ‘발주처’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나. ‘선정업체’는 과업 수행 중 설치방법에 대한 변경 및 교체 사유 발생 시 ‘발주처’측의 지시에 따라 이행한다.

#### 3. 현장 관리

- 가. ‘선정업체’는 작품별 사전 분석, 구현의 기술적인 방법, 기타 제반 기술 상담, 장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동 등에 필수적인 기술전문 인력을 제공한다.
- 나. ‘선정업체’는 설치과정 중 전시장이나 기반시설이 손상될 경우에는 즉각적인 복구 및 변상을 해야 한다.
- 다. ‘선정업체’는 전시장 내 작품을 절대 임의로 이동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안되며, 기기 설치 시 작품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‘발주처’의 담당자에게 사전보고 후 지시사항에 따른다.
- 라.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인적, 물적 피해에 대해 ‘선정업체’는 배상하여야 한다.

마. 설치인력의 풍기 및 위생단속을 철저히 하고, 당일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장의 정리·정돈, 청결 유지과 도난,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#### 4. 전시 기간 중 유지 보수 및 관리

가. 전시기간 중 영상장비 및 기자재의 결함이나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품이 작동중지 되었을 경우 ‘선정업체’는 전시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. (1일 이내)

나. ‘선정업체’는 전시 기간 중 ‘발주처’의 요청이 있을 경우 2024부산비엔날레의 영상장비를 운용 및 점검할 수 있는 전문설치인력에 의한 영상장비 운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## 4 과업 보고 및 서류 제출

1.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. 착수계 제출 시 투입인원에 대한 세부 이력과 전시장별 추진 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.
2. ‘선정업체’는 과업 수행 중 ‘발주처’가 요구할 경우 참석하여 장비 수급, 설치, 작품구현, 관리 및 운용, 철수 시 작업준비 및 진행사항을 보고하고, 기타 진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.
3. ‘선정업체’는 영상장비 철거 후 7일 이내 완료계, 대금지급요청서, 설치 및 철거 사진자료, 최종 장비리스트를 첨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.

### 5 기타사항

#### 1. 회의참석 및 보고

가. ‘선정업체’는 ‘발주처’의 요청이 있을 시 본 과업과 관련된 회의 및 보고회 등에 참석하여 설명하고 질의에 응답한다.

나. ‘발주처’의 요청 시 본 과업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한다.

#### 2. 계약변경 및 변경사항 등의 통보

가. 계약서의 내용과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할 시 서면으로 소통하며 합의하에 계약의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다.

나. ‘선정업체’는 계약체결 이후 대표자, 담당자 등의 주요한 정보 및 사항이 변동되었을 경우 ‘발주처’로 즉시 통보해야 하며,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‘선정업체’의 책임으로 한다.

### 3. 이견 발생 시 처리 및 규칙 준용

- 가.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나.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예규에 의하여 결정한다.
- 다.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‘발주처’와 ‘선정업체’가 협의하여 정한다.
- 라. 천재지변 및 기타 재난 상황(코로나19 등)의 상황이 발생 시, 계약에 관한 사항은 ‘발주처’와 ‘선정업체’가 협의하여 정한다.